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 선고 2022가단51390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한민국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기완

변론 종결2023. 6. 9.

판결 선고2023. 9.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2019. 9. 24.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는 2019. 8. 22. 주식회사 C에 서울 용산구 D 대 132㎡와 그 지상 3층 및 지층 주택(이하 위 토지와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6억 원에 매도하였고, 2019. 10. 21. 위 회사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후 위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는 2019. 12. 23. 위 매매계약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용산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 산하 용산세무서장은 2020. 9. 16. B가 위와 같이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 납부기한을 2020. 10. 15.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953,499,080원을 고지하였다.

라. B의 2022. 5. 24. 현재 국세채납액은 다음과 같다(이하 채납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양도소득세	2019년	2019. 10. 31.	2020. 10. 30.	843,211,990원	1,074,943,150원
-------	-------	---------------	---------------	--------------	----------------

마. B는 2019. 9. 24. 딸인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9. 9. 24.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위 사해행위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B가 2019.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9. 9. 23. 중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위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서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참조).

한편,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가리키고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이 모두 지급된 날을 가리킨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7525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4980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는 통상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대한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 이미 성립되었다거나 이에 기초하여 이러한 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관한 계약 등의 교섭이 진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를 성립시키기 위한 교섭이라고 볼 수 없어서 채무 성립의 개연성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는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 시기는 E가 잔금을 수령한 2019. 10. 21.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19. 10. 31.로,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지급행위(2019. 9. 24.) 이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는 B가 매매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기 이전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2.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채무를 성립시키기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지급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임상은